

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 기획단 설치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2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2월 4일

3. 제안이유

- 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추진 기구 및 인력이
내무부 지기 12200 - 44 ('93. 2. 3)호로 승인되어
- 지방자치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사업소의 설치목적, 위치, 업무
또는 단장보직명칭과 공무원 정원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사업소 명칭 : 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
- 위 치 : 충북도청내 설치
- 업 무 :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, 단지조성,
분양관리 등
- 단 장 : 지방부이사관
- 공무원정원 :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
- 설치기한 : '94. 12. 31까지 한시적 설치

5. 검토의견

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조례를 검토한 바,

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추진 기구 및 인력이 내무부지기 12200 - 44 ('93. 2. 3)호로 승인되었기 지방자치법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사업소의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,

주요 내용으로는

- 기획단 설치 목적 및 위치
- 단장 보직 명칭 및 공무원 정원 규정
- 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, 단지조성, 분양관리 등의 업무 처리 내용등을 규정한 것으로서

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청주 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조례안